

피부 보습 로션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01202 (2018.11.02.)
- 쟁 점 사 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중국
- 최종 원산지: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 건조한 피부의 갈라짐·균열·가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한 피부 보습 로션		
재료		싱가포르	• 디메티콘(dimethicone)
		중국	• 물 • 유화제, 방부제, 증점제, 추가 보습제, 향료, 글리세린, 오일 등 불활성 성분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싱가포르  디메티콘 생산 Manufacturing ▾  중국  STEP 1 싱가포르 디메티콘 수입 STEP 2 디메티콘을 물로 희석 STEP 3 기타 성분과 혼합 STEP 4 검사 및 포장 Export ▾  중국 최종 수출		
		싱가포르	• 활성성분인 디메티콘 생산
상세 공정		중국	• 디메티콘을 물로 희석 • 유화제·방부제·증점제·오일·추가 보습제·향료 등의 성분과 정해진 비율로 혼합 • 최종제품 생산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싱가포르산 디메티콘이 유일한 활성성분이고 중국에서는 이를 물 및 기타 성분과 단순 혼합할 뿐이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싱가포르임

《CBP의 판정》

- ⊙ 디메티콘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산업·제품에 사용될 수 있어, 중국으로 수입되는 시점에는 최종제품인 피부 보습 로션으로서의 구체적인 특성과 용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음
- ⊙ 최종제품은 디메티콘 외에도 물, 유화제, 방부제, 증점제, 오일, 추가 보습제 및 향료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며, 중국에서 이들 성분을 정해진 비율로 배합함으로써 원재료인 디메티콘과 구별되는 완성된 피부용 로션의 특성과 용도가 형성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Ⅳ 시사점

- ⊙ 혼합·희석 공정의 실질적 변형 여부는 공정의 형식이나 화학반응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혼합 후에도 주원료가 완제품의 본질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또는 여러 성분의 정해진 배합을 통해 원재료와 구별되는 특성과 용도를 가진 새로운 완제품이 형성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향수
사례번호	HQ H304539 (2020.04.20.)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미국] - 여러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향수 오일 베이스 생산 • [중국] - 오일 베이스 12%, 에틸알코올 및 물 88%의 조성이 되도록 혼합하여 희석 - 전용 용기에 담아 포장
판정 결과	• 미국산 향수 오일 베이스가 완성된 향수의 본질을 형성하며, 중국에서는 이를 물과 에틸알코올로 희석하여 사용 가능한 농도로 조정할 뿐 화학적 정체성과 특성이 유지되고 별개의 상거래 물품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임

유의사항 :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